

꿈드림희전정기예탁금 특약 일부개정약관

꿈드림희전정기예탁금특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· 신규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<u>세금우대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,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</u>	제9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<u>세금우대저축,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</u>